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
1. 공익신고란?

- 공익침해행위*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.

*공익침해행위 : 279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
2016년 1월 25일 법률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99개 추가



2. 공익신고는 누가, 어디에, 어떻게?

- Who?
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.

- Where?



- How?

신고자의 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 내용,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.

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,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을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3. 공익신고자 보호

○ 비밀보장

○ 신변보호

○ 책임감면

비밀보장	신변보호	책임감면	불이익 조치 금지	보호 조치
------	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



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,면제가 가능합니다

 형·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·면제	공익신고자등의 범죄·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·징계·행정처분 하는 경우 징계권자,처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
 직 무 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	공익신고 내 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	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

○ 불이익 조치 금지

비밀보장	신변보호	책임감면	불이익 조치 금지	보호 조치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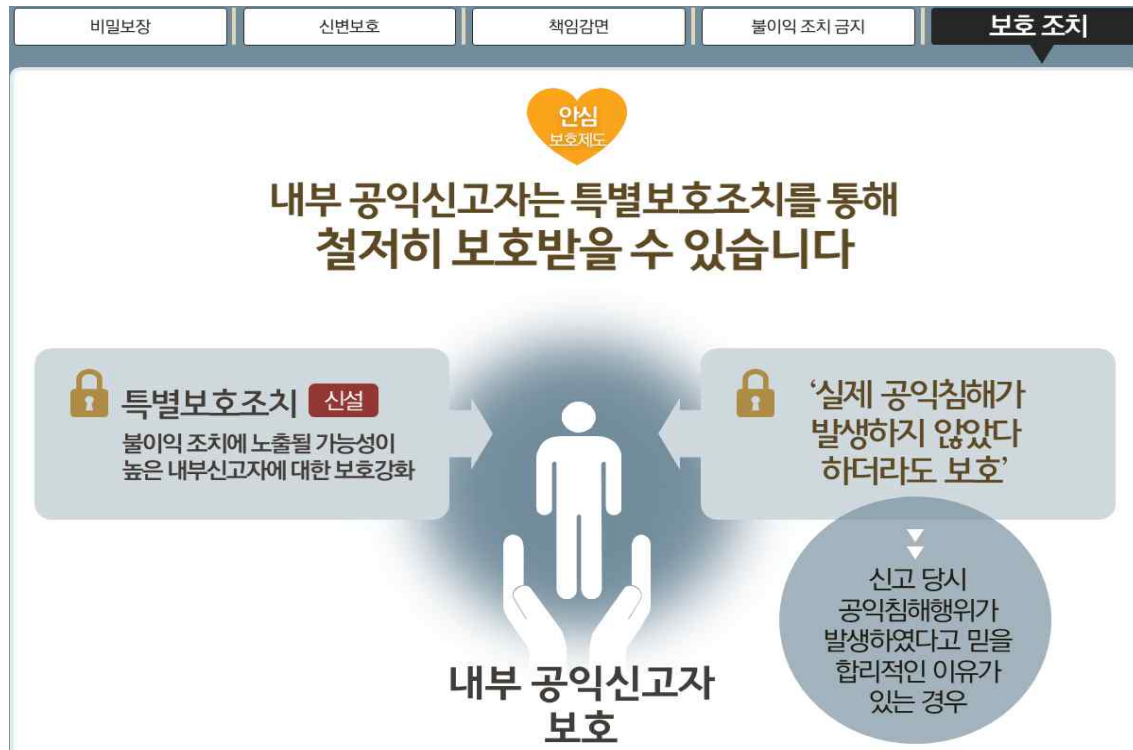
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


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



이를 위반할 경우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**

○ 보호조치



4. 공익신고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

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	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4~2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억원까지 지급 ※ 단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, 미지급
내·외부 공익신고자 포상금	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함(최대 2억원) -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,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-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-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·개정 또는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
구조금 지급	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